Daekwang Logebien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 A-44 대광로제비앙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6.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일 2016.01.01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준공)을 받을 공동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제를 위한 상업지역(전매제한),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바닥충격음성능 등 주택성능등급 인정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동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분양되는 공동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바닥충격음성능 등 주택성능등급 인정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동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분양되는 공동주택입니다.

※ 「세대구성 기준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세대원」이라 함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를 말하며,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는 세대를 말하며,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2)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3)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4)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5)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6)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